

## 2026년 제8회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1호) 가목재터널 건설공사 실시설계

2. 회의일시 : 2026. 5. 18(월) 14:00~15:00

3. 장 소 : 도청 호국실(209호)

4. 참석자 등록부

일련번호	전문분야	위원 성명	참석여부	비 고
1	소위원장		여	
2	토목구조		여	
3	토질기초		여	
4	토질기초		여	
5	도로 및 공항		여	
6	도로 및 공항		여	
7	교통		여	
8	토목시공		부	
9	토목시공		부	
10	품질안전		여	
11	전기전자		여	

5. 회의내용 : 별첨

**【 간 사 】**

- 제8회 심의안건 개요 및 심의 방법 설명
- 회의록은 발언자의 실명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안내
  -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14조
  
- 성원보고 : 소위원회 11명중 9명 참석
  - 과반수 이상이 참석함에 따라 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
  - 참석위원 및 사업관계자 안내

**【 소위원장 】**

- 네 반갑습니다. 경북도청 지역개발과 000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1건입니다. 도로철도과에서 시행하는 가목재터널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의견, 공사기간산정 적정성 검토 의견,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 3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사전에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안건에 대해 원활한 기술심의 진행을 위해 답변을 잘해주시고,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제8회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제 1호안건인 도로 철도과에서 수행하는 가목재터널건설공사에 대한 3건에 대한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 발주청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음

**※ 발주청 제안설명**

**【 소위원장 】**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앉

으신 순서대로 토목구조 000 위원님부터 전기전자 000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구조의 000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구조분야 000위원 】**

- 지적한 내용의 조치계획과 그에 따른 별첨을 확인해 보니, 적정하게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설계는 재개정된 법령과 국가설계기준을 인용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고서나 구조계산서에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혼용이 되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치해 보고서를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간 협의내용, 심의의견들을 조치하게 되면 통상 별첨 또는 첨부하게 되는데 추후 공사발주나 설계시에 찾아보기 어려워 그 내용이 보고서에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서 내용파악이 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

- 네. 다음은 000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질기초분야 000위원 】**

-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에 반영되어 특이사항은 없고, 공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본 현장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지반조건이 급변해서 지보패턴변화가 빈번하게 설계되어있고, 터널 굴착시에 페이스 맵핑 결과에 따라 지보패턴이나 보조공법이 자주 바뀔 것 같고 이 경우 시공 효율로 인해 공기 증가가 예상되고, 유사현장 5개를 같은 공사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때 다른 현장에 비해 공기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 질문, 비교 5개 현장과 공사비 제외. 지반조건이나 시공조건을 고려했는지와 두 번째 다른 현장 터널과 같은 지반조건에서 작업효율 저하가 예상되는데, 이런 점이 공기산정에 반영되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설계사 】**

- 첫 번째, 비교 현장의 지반조건 및 시공조건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공사비, 연장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만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질의 주신 지반 및 시공조건 요소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업 효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사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품셈 기준의 50% 작업 효율을 적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작업량 및 공사기간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

- 다음은 000 위원님.

**【 토질기초분야 000위원 】**

- 3번 답변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린 내용은 지하수위 기준과 관련된 사항인데, 첨부자료에는 내진설계 기준 관련 내용으로 일부 변경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지반설계 기준에 맞도록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측 관련 사항입니다. 도면과 수량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첨부자료에는 변경된 내용만 제시되어 있어서 첨부자료에 관련 수량과 도면도 함께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계측과 B계측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도면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갱구부 지층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따라 갱구부 토공 계획도 함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안정 해석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관련 지침과 검토 결과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번 강제 동바리 비용이 제작비만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설명 내용을 보면 설치 및 해체 비용도 제작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동 비용은 별도로 내역서에 반영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설계사 】**

- 3번 의견의 경우, 저희가 별첨자료는 맞게 첨부하였으나 조치계획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상의 심의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의견은 보수적으로 설계한 부분이 있어 직천공 및 토사 구간으로 검토하였으나, 해당 구간의 지층 상태가 추가 조사 결과 기존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직천공이 아닌 일반천공 및 대구경 강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석·보고서·도면 등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번 의견의 경우, 저희가 수량산출서만 수정하여 별첨하였는데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수량도 함께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은 조치계획 작성 과정에서 일부 표현 오류가 있었던 사항으로 강제 동바리 설치 비용과 함께, 라이닝 시공 시 회차별 이동 및 해체 비용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질기초분야 000위원 】**

- 기존 내용상으로는 제작 비용과 설치·해체·이동 비용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답변과 첨부자료에는 이동·설치 비용만 반영된 것처럼 보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비용이 추가되면 금액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금액은 동일한 상태로 보입니다.

**【 설계사 】**

- 강제 동바리 1식 비용에는 제작 및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차별 이동 및 해체 비용은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횡수만 우선 반영된 상태로, 단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금액 변동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라인 길이 조정 사항 등을 포함하여 추가 검토 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질기초분야 000위원 】**

- 알겠습니다. 추가로 공기 산정 관련해서 36번과의 경우 라이닝 콘크리트 작업량을 기존 3.3m에서 2m로 수정하셨는데, 첨부자료에는 작업조가 기존 1

조에서 2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상에는 여전히 1조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업조가 2조라면 강제 거푸집 제작 비용도 2조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설계 파트와 협의가 된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설계사 】**

- 설계에서는 아직 그 공사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 토질기초분야 000위원 】**

- 해당 부분은 단순 누락이나 오류일 수 있으니 수정해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경될 경우 전체 공기에 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7번 답변 내용상으로는 굴착 완료 후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 공기 산정도 그런 방식으로 검토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작업조를 2조로 운영하여 라이닝 타설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신 것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설계사 】**

- 작업조를 2조로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은 설계사와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닝 작업이 후속 공정에 위치해 있어 실질적으로 1조 운영이 될 경우 일부 공사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정들에서 복합 공정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병행 시공으로 검토하여 전체 36개월 공사 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토질기초분야 000위원 】**

- 작업조를 2조로 운영하면 공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만 현재 검토상으로는 다소 촉박해 보입니다.

**【 설계사 】**

- 작업조를 2조로 운영할 경우에는 공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내역서 기준처럼 1조 운영으로 계획된다면, 다른 공정과의 연계 및 전체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토질기초분야 000위원 】**

- 복합 공정을 적용하려면 라이닝 작업이 발파 작업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 유격거리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발파 시 발생하는 먼지나 진동이 후속 라이닝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철근 배근 등 작업 환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합 공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적용하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충분히 검토 후 공기 산정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설계사 】**

- 해당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

- 다음 000 위원님.

**【 도로및공항분야 000위원 】**

- 도로분야 000입니다. 제출해주신 의견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내 용어가 혼용된 부분이나 일부 오타 등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 이해에는 큰 무리가 없어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으나,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신다면 조치계획서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위원장 】**

- 예, 다음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및공항분야 000위원 】**

-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의 경우 STA.0+910.0, STA.0+940.0에 횡배수관 1000mm와 종배수관 450mm에 대해 수리 계산을 수행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11번의 경우 밀양 지점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거창으로 수정하게 되면 강우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6×1.0 규모의 개거는 수리 검토 결과 약 1.0×1.0 규모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단순 표기 수정에 그치지 않고 단면 축소를 포함한 추가 검토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설계사 】**

- 6번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횡배수관이 다소 무리하게 계획된 측면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종배수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 수리계산을 수행한 결과, 종배수관은 본선 종단경사를 따라 유속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유출부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횡배수관이 1000mm라 하더라도 종말부 유출되는 곳은 종배수관 600mm로 계획하더라도 통수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준으로 보완하였습니다. 11번 문항의 경우 거창 지점으로 변경 시 단면이 축소되는 부분은 수리검토를 재수행해 용량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

- 000 위원님.

**【 교통분야 000위원 】**

- 5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보안 내용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수요 예측 및 차로 수 검토에서 현황 정산결과를 설계 보고서에 수록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별첨 6-1에 현황 정산결과를 넣어주신 게 관측교통량이 현황 교통량과 지도상의 교통량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 하셔서 일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설계사 】**

- 교통 쪽 보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미처 저희가 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분야 000위원 】**

- 숫자가 상이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차로 수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방향 보정계수와 침두시간 계수 이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달라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현장 조사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두 개의 계수 값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값을 중방향 보정계수는 0.51, 침두시간 보정계수는 0.91을 적용하였으며, 현장 조사와 통계 자료 상에서 나타난 것들을 정리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서에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설계사 】**

- 저희가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완해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

- 다음 000 위원님.

**【 품질안전 000위원 】**

-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심의 중에 굴착기 유해가스 측정과 관련해서 가스 등 4가지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되면 이제 부적정인데 이것을 측정하려면 기계가 들어가는 데 이거는 산업안전 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의 처벌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을 보면 좀 다른데 개념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가면서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시설을 위배했을 때는 사업주를 벌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니 전담 안전 관리자가 배치돼 있는 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설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

- 마지막으로 000 위원님.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설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7번에 보면은 휘도제어 조명 방식으로 개선하여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 구간을 나눠서 똑같이 휘도 제어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해서 반영하여 보고서에 쓰실 건가요?

**【 설계사 】**

- 휘도제어 말씀 질문 주신 거는 기존에 회로제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조광기로 기존에 적용된 것을 휘도계로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방식은 그대로 하고 구간별로 의도한대로 설치하는건가요?

**【 설계사 】**

- 예, 회로제어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휘도만 센서로 입력해서, 그러면 입구 쪽에 휘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설계사 】**

- 터널 내부하고 외부하고 휘도계를 설치해서 그 편차를 이용해 제어할 생각입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제어방식은 그대로 쓰겠다는 건가요?

**【 설계사 】**

- 네 저희가 5단계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9번은 현장사무실 가설 쪽인데 본 과업서 미반영됐는데 반영으로 체크할 이유가 있습니까.

**【 설계사 】**

- 네, 검토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작은 현장은 전기 현장 사무실을 따로 안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공구를 차에 가지고 와서 하므로 저희가 현장 사무실을 따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도면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전기만 공급하는건가요?

**【 설계사 】**

- 공사 전체 현장 사무실에 전원 넣어준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예 알겠습니다. 17번은 도면을 원래 없는데 누락이 됐다고 이제 추가 반영을 하셨다는데 앞에 보면 통합 관제센터라는 도면이 있는데 자동 제어 시스템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 설계사 】**

- 현장에서는 옥외 전기실에 LVT라고 통신함이 있습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거기에 통합 관제 센터하고 자동 제약 시스템하고 같이 두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 제약 시스템에 통합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건가요?

**【 설계사 】**

- 현장에는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간단한 모니터와 재방송 설비 주장치가 설치되며, 통합관리 사무실에서는 해당 설비들이 연계·연동되는 구조입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포함된 통합 구성이라는 의미인가요?

**【 설계사 】**

- 네, 전력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포함입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다음으로 20번에 공사 기간에 대해서 ASOS 279 지점이 거창입니까? 구미입니까? 그리고 관측 지점이 바뀌었는데, 비작업 일수가 동일하게 계산돼서 나왔는지요?

**【 설계사 】**

- 기상대 같은 경우는 당초 구미에서 김천 거창 두 군데로 통합으로 계산해서 반영했습니다. 구미를 제외하고 김천하고 거창을 해서 평균값으로 적용을 했으며, 정확하게 숫자는 확인이 안되지만 비작업일수가 일부 바뀌었을 겁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전체 일정은 똑같은데 비작업일수와 작업일수는 변동이 된다는 건가요?

【 설계사 】

- 작업일 수하고 비작업일수 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일주일 내외에서 변경 됐습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구미를 빼고 거창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설계사 】

- 김천하고 거창의 거리가 큰 차이가 없어서 두 군대를 다 반영했습니다.

【 전기전자분야 000위원 】

- 28번은 미반영됐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했습니다. 나머지는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도로및공항분야 000위원 】

- 제가 궁금해서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PPT 9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터널 기계분야 방재설비 선정에서 보면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터널 및 방재시설 설치 위치는 격벽분리형을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양방향이 통행이 이루어지는 터널 내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 터널이라고 해도 이용자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량적 위험도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이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설계사 】**

- 터널 방재 설계 기준에 보면 연장이 250m 이상이 되면 QRA 분석을 통해서 별도의 대피 시설을 설치를 검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 결과 설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검토 결과 격벽 분리형 대피 통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도로및공항분야 000위원 】**

- 검토라는게 어떤걸까요?

**【 설계사 】**

- 교통량, 사고 발생 시 이동거리, 이용자의 이동속도 등 관련 요소들은 모두 포함하여 검토·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라 필요하시면 별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및공항분야 000위원 】**

- 단 터널이어도 지침에 필요한 건데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설계사 】**

- 지침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대피시설 설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QRA 분석 과정 없이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해당 기준을 검토·해석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도로및공항분야 000위원 】**

- 저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터널이 하나 있었어요. 기재부가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거기서 안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정량적 평가는 좋

다. 화재시 인간의 존엄성이 문제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공사비 한도가 여유롭다면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반영한 경우가 있어서 단편적으로 그냥 정략적인 거로만 판단하는 것보다 안전을 좀 우선시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 소위원장 】

-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지금까지 나오신 의견들을 정리해 봤는데, 원래 사전 검토를 내신 000 위원님하고 000 위원님도 내셨는데 그분의 의견들은 다 반영된 걸로 조치계획이 나왔고요. 거기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지금 발주 시기의 착공이라든가 발주 시기에 맞춰서 최근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반영 해달라는 의견, 다음으로 일부 누락이나 혼용된 부분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적된 내용들이 보고서나 설계서상 자료로만 준비하지 말고 좀 인지될 수 있도록 수립 좀 해달라는 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률 개정사항은 저희도 설계하다 보면 설계 시점하고 그다음에 발주 시점 좀 차이 날 때 가능하면 품질이나 안전 쪽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최근 개정된 법률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000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사 기간 산정 및 기상대 위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구미 기상대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김천과 거창지역의 수위 계산을 할 때는 기상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던데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떤 강우강도를 가지고 오느냐 지금 김천하고 거창 가는 게 맞다는 게 이제 000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건 차후에 어차피 조치계획 나오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 기간 산정 그거 관련해서 답변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던데 공사비만 가지고서 5개 현장 비교 검토해서 했다. 그런데 지반조건, 시공조건이 고려된 경우에는 어떤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료가 없어서 반영이 힘들다는데 이것은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그냥 수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작업 효율 저하 부분도 50% 할증을 반영했다고 했고, 000 의원께서 3번 답변의 지하수위 별첨 관계는 보고서에 수정하겠다 했습니다. 다

음으로 계측 부분에서 도면과 수량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갱구부 토지 지침 확인 부분도 그때 얘기했었고 강제 동바리 회차 별 이동 및 해체 비용에 대한 이동 내역서 말씀하셨고, 공사 기간 작업 2조 또는 1조로 할지에 따라서 공사 기간 산정하고 같이 연계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역사에서 답변한 것은 복합 공종으로 하게 되면 공기 산정이 36개월에서 일부 조금씩 반영이 돼서 공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업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께 사인받도록 하시고, 다음 000 위원님도 용어가 혼용되어 있고 오타도 많다고 하셨는데 최종 보고서는 정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님은 종배수 관에서 관경으로 얘기하셨는데 450mm관을 600mm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기상대 관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미 기상대에서 김천하고 거창 기상대로 바꿨는데 수리계산이 모두 바뀌어야 할 것 같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주처에서 반영 바랍니다. 000 위원 교통 분야의 관측교통량 자료 정리 부탁드립니다. 000 의원님은 유해가스 측정 이야기하시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해 처벌법 관련해 근로자 안전과 사업주 책임이 따라오니 이 부분에서도 다뤄주시고, 000 위원님께서서는 조명 방식 휘도 제어 방식이라 말씀 주셨는데 휘도계를 설치해 그 편차를 이용해 제어하고 5단계 제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 내 난방 설비 이야기가 있었는데 검토했다는 게 반영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어시스템과 통합 관제 시스템을 옥외 전기실에 하셨고, 공사 기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은 ASOS(279지점)이 구미로 되어있고, 조치계획은 거창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위치인데도 오탈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00 위원 터널에 격벽 분리형 대피 통로에 대해 검토 기준에서는 250m 이상 터널에서는 검토하는데, 정량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하고, 000 의원은 기재부 갔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니 넣으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데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추가로 답변이라든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질의답변 종결

※ 토론 종결

【 소위원장 】

- 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음
-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의의견서에 최종의견과 설계심의 ①원안채택 ②조건부 채택, ③ 재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심의 ①원안채택 ②조건부 채택, ③ 재심의,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심의 ①원안채택 ②조건부 채택, ③ 재심의 등 종합의견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음.

제1호 안건, 「가목재터널 건설공사」의 설계심의에 대하여 참석 위원 8분 중 2분이 원안 채택, 6분이 조건부 채택으로 의견을 내셨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는 참석위원 8분 중 2분이 원안 채택, 6분이 조건부 채택으로 의견을 내셨으며,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 심의는 참석위원 8분 중 4분이 원안채택, 4분이 조건부 채택 의견을 내셨음. 이에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1호 규정에 따라 1호 안건인 「가목재터널 건설공사」 설계심의는 “조건부 채택”,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는 “조건부 채택”,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 심의는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함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비롯하여 심의 주관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8회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